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는

2005년 변화하는 제도들

강산이 변하고 시대가 바뀔에 따라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제도들도 그 모습을 달리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사회가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닭처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2005년 을유년에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자에게 맞는 제도로 활용토록 해야겠다.

■ 종합부동산세 도입

2005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된다.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는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는 인별 소유 부동산가액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사업용토지는 공시지가 40억원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사이에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 동안의 보유세 부담의 불공평을 완전히 바로잡기 위하여 주택을 시가기준으로 과세하게 됨으로써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분양가 상한제 및 택지채권 입찰제 도입

올해 2월말 이후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되는 85제곱미터(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토지수용 등을 통하여 공익목적으로 개발·조성한 택지에서 건설되는 소형주택은 무주택자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우선공급되도록 조치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기관 건설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토록하여 주택분양절차를 투명화하고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을 때 과거에는 감정가액으로 공급했으나, 올해에는 8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을 건설코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의 재원을 향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금영수증제도 실시

올해에는 현금영수증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 결제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제도로,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시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비자와 가맹점,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소비자

-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 현금영수증 수취자 추첨을 통한 보상금 지급(연간 36억원)

▶ 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법인 제외, 연간 500만원 한도)
- 현금결제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무상 설치
- 전년대비 매출액 130% 초과시 부가가치세 · 소득세 · 법인세 감면

▶ 현금영수증 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음 금액을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 17,500원」(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 5,000원 이상 현금결제 건수 × (22원±30%)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확대 시행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은 가입자가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서비스의 요금, 품질 등을 비교하여 원하는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해부터 일부 통신사 가입자에게 적용 · 시행되어 왔다.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장기적인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사업자별로 시차를 두어 시행한 이 제도는 2004년 1월 1일부터 SKT가입자가 KTF나 LGT로 번호이동이 가능했고, 2004년 7월 1일부터는 KTF가입자가 SKT나 LGT로 번호이동이 가능했다. 이에 올해부터 LGT 가입자에 대한 번호이동이 확대 시행됨으로써 이동전화에 있어서의 번호이동이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번호이동 신청은 단말기와 신분증을 가지고 원하는 통신회사의 인근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번호이동 수수료 : 1,000원)

■ 음식물류 폐기물 식매립금지제도 실시

올해에는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으며, 소각 · 퇴비화 ·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만 매립하여야 한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해충,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과 매립지 사용연한 단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감량하고 자원화하는 정책에 따라 실시된 제도로, 환경보전 및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을 통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이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이용 등을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